

3.1.16 입시홍보위원회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입시홍보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1인
2. 위원 7인 이내(필요에 따라 증원가능)
3. 간사 1인

제3조(위원회 위촉) 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입시관련 홍보계획 수립, 시행
2. 입시홍보물 제작, 지원
3. 입시관련 신문광고 제작심의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